

대학원 TESOL학과 운영 내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단국대학교 창학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학원의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라 TESOL학과의 합리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TESOL학과 석사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제2장 입학관리

제3조 (우수학생의 유치) TESOL학과 소속 교수들은 TESOL학과 석사과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학생의 모집에 적극 노력한다.

제3장 교육과정 및 교·강사 배정

제4조 (교육과정)

1. TESOL학과는 TESOL 전공 과정을 가진다.
2. 석사과정으로 전공 24학점과 연구지도 6학점 총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비논문 석사과정은 6학점 추가 이수해야 한다. 논문대체과목은 80점 이상일 경우만 논문제출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3. 동일 과정 내 동일 교과목을 이수하면 학점 인정 처리가 불가하다.

제5조 (과목개설) 과목개설은 TESOL 전공 교육과정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며, 2개년도 이내에는 동일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는다.

제6조 (교·강사 배정)

1. 개설 교과목의 교·강사 배정은 TESOL 전공 전임교수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2. 교·강사를 배정할 때 전임교원을 우선으로 한다.
3. 전임교원의 연구년이 된 경우, 수강생이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를 배정할 수 있다.

제4장 논문지도

제7조 (지도교수의 선정)

1. 지도교수 신청서는 석사과정(논문·비논문 과정 모두) 입학 후 첫 번째 학기 말에 제출한다.
2. 지도교수 선정 시 본인의 전공 및 연구 주제에 맞는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3. 지도교수를 선정할 때 반드시 해당 교수와 면담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5장 자격시험

제8조 (종합학력시험 면제기준) TESOL학과는 종합학력시험의 면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전 이수과목 성적이 90점 이상 시 면제

제9조 (종합학력시험 출제와 채점)

1. 전공 24학점 이수 후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 교과목은 TESOL 전공필수 과목 중에서 재학생이 2개 과목으로 선택한 과목이다.
2.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합격점수는 70점 이상이다.

제10조 (외국어시험 과목)

1. 외국어시험 공지 및 일정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를 확인한 후 응시한다.
2. 외국어시험 과목은 영어로 시행한다.
3. 공인어학성적(IBT TOEFL 93, TOEIC 850, TEPS 773 이상)에 의한 면제는 내국인 학생에만한다.

제6장 학위과정

제11조 (석사학위 과정 선택)

1. 석사학위의 취득을 위해서는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2. 석사학위 과정생은 전공 24학점, 연구지도 6학점 이수, 외국어시험, 종합학력시험 통과 후 학위논문 심사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석사학위 논문 대신에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6학점 추가 이수하는 비논문 석사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
4. 비논문 석사과정(논문대체)은 36학점 이수 및 평균 80점 이상(전공 30학점, 연구지도

6학점), 외국어시험, 종합학력시험 통과 시 자격이 주어진다.

제12조 (석사학위 과정의 변경)

1. 학위취득과정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2. 단 사유서를 첨부한 후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할 경우 3학기 말까지 대학원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7장 학위논문 심사 및 제출

제13조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 학위논문 심사와 관련한 연구계획서는 매 학기 지도교수에게 제출하며,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지도를 받는다.

제14조 (예비발표)

1.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재학생 3학기에 시행한다.
2. 예비발표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제15조 (논문심사위원)

1. 석사과정생의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으로 구성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TESOL 관련 전공자로 전임교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6조 (논문대체 심사절차)

1. 비논문 석사과정(논문대체)생의 합격 여부 판정은 심사위원장이 우선한다.
2. 비논문 석사과정(논문대체)의 심사결과 총 2회 불합격 판정 시 학위논문에 준하여 ‘수료’로 인정한다.

제17조 (논문대체 제출)

1. 비논문 석사과정(논문대체)생은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6학점 추가 이수하고 논문대체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 논문대체로 인정한다.

제8장 학과 운영위원회

제18조 (의사결정 방식) 학과 운영위원회는 주임교수가 주최하며, 전체 교수 1/2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과 참석 교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